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566호 2021. 5. 27. (목)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813호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81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10
- 정선군 조례 제2815호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19
- 정선군 조례 제2816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30
- 정선군 조례 제2817호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40
- 정선군 조례 제2818호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45
- 정선군 조례 제2819호 정선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51
- 정선군 조례 제2820호 정선군 아리랑의 날에 관한 조례안.....60

- 정선군 조례 제2821호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62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58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7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73회 정선군의회(2021. 5. 18.)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4.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13호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민간위탁” 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
- “수탁기관” 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해당 위탁 계획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 사항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거나 군의회에 보고한 경우

④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종사자의 임금지급, 처우개선 사항, 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 등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업무 담당 부서에서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

(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위원회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15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9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1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9조(운영 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처리지침 등)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3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적용례) 군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민간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②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③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④ 정선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⑤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⑥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⑦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⑧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⑨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⑩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⑪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⑫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⑬ 정선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⑭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⑮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⑯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⑰ 정선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 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⑱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⑲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전단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⑳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㉑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9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㉒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㉓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㉔ 정선군사복공공도서관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

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㉕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㉖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㉗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제안이유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소관 부서별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완을 통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명 변경

1) 당초 :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 변경 :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제1조 ~ 제3조)

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4조)

라. 의회 동의(제5조)

마.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제6조 및 제7조)

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8조 ~ 제15조)

사. 수탁기관 관리 및 운영(제16조 ~ 제24조)

제273회 정선군의회(2021. 5. 18.)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4.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1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선군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그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1명마다 연 6일 이내의 보육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군이 개최하는 행사 중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2. 산불예방, 진화활동 및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안·제안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마다 해당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휴가 사용은 4회 이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⑥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입영 일 및 훈련소 퇴소일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법 제66조의에 따른 정년퇴직 또는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20일의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염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
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
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결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제안이유

-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
나. 경조사 휴가 등 현행 복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공가, 병가, 연가 등 삭제
- 공가, 병가, 연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복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만 조례에 정비
- 나.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20일의 퇴직준비 특별휴가 신설(제12조)
- 다. 경조사 휴가 일수 조정(사망) (별표 3)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기준 2일) 개정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기준 2일) 개정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신설)

제273회 정선군의회(2021. 5. 18.)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4.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15호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정선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강원도 정보화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정선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 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 · 해소
9. 채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 을 “(지능정보화책임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 시책” 을 “지능정보화 시책” 으로, “지역정보화 사업” 을 “지능정보화 사업” 으로, “정보화책임관” 을 “지능정보화책임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책임관” 을 “지능정보화책임관” 으로, “과장” 을 “부서의 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 중 “정보화책임관” 을 각각 “지능정보화책임관” 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정보화의 추진” 을 “지능정보화의 추진”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을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역정보화” 를 각각 “지능정보화”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 추진” 을 “지능정보화 추진” 으로, “지역정보화와” 를 “지능정보화와”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역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u>지역정보화</u>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국가정보화 기본법」</u>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정보화부서”란 정선군(이하 “군”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p><u>정선군 지능정보화 조례</u></p> <p>제1조(목적) ----- <u>지능정보화</u>----- ----- <u>「지능정보화 기본법」</u>----- -----.</p> <p>제2조(정의) ① ----- -----.</p> <p>1.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u><삭 제></u></p>

4. (생 략)

<신 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정선군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
지능정보화-----
-----.

1. ~ 4. (현행과 같음)

5. 지능정보화 -----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삭 제>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 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
 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 · 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
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 · 제
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
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정선군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년 정선군 정보화 시행계획(이
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강원도 정보화 종합계획과 연계
하여 매년 정선군 지능정보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

다.

1.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 업무담당 과장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
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
정한다.

<삭 제>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

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

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

• 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

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

립 · 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

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 이

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

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

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지능정보화 시책-----

----- 지능정보화 사업-----

“지능정보화책임관” -----

---.

② 지능정보화책임관-----

----- 부서의 장--.

③ -----

----- ----- 지

능정보화책임관-----

---.

④ 지능정보화책임관-----

-----.

1. ~ 7. (현행과 같음)

8. ----- 지능

정보화책임관-----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

 ----- 지능정보화-----
 ----.
 ② ----- 지능정보화-----

 -----.
 ③ ----- 지능정보화-----

 -----.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지능정보화-----

 -----.
 ② ----- 지능정보화 추
 진----- 지능정보화와 -----

 ---.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생 략)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능정보화-----

-----.

제안이유

-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종합(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므로, 자체 기본계획 수립 삭제하고
나. 정선군 지역정보화위원회 기능 및 역할이 유명무실하여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 「정선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
나.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제1조)
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삭제 (제4조)
라.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개정 (제5조)
마. 지역정보화위원회 및 기능 삭제(제6조, 제7조)

제273회 정선군의회(2021. 5. 18.)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4.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16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담당과장” 을 “담당국장” 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 를 “감정평가법인등” 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을 “감정평가법인등을” 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액” 을 “감면”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를 “영 제17조제6항제2호, 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 로,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를 “대부료등의” 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9조의2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부료등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0” 을 “100” 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3월 이내 2회” 를 “3개월 이내”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 이내 3회” 를 “6개월 이내”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9월 이내 4회” 를 “9개월 이내” 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4. 4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분납

제37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이” 를 “교육지원청이” 로, “교육청에” 를 “교육지원청에” 로 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3급 관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7조를 제68조로 하고,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유재산 운영상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5항·제6항·제7항·제8항 및 제33조, 제34조제2항·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 ----- ----- ----- ----- ----- -----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생략)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 ----- ----- -----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생략)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과장과 나머지 1명은 심의회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⑨(생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 ----- 담당국장----- ----- -----.
제4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생	제4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현

략)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 3. (생 략)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행과 같음)

②-----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 · 3. (현행과 같음)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감정평가법인등-----

----- 감정평가법인등을-----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③ 삭제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20을 감액할 수 있다.

⑤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액 할 수 있다.

⑥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④ -----

감면-----
----.

⑤ 제19조의2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

⑥ 영 제17조제6항제2호, 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
----- 대부료등의 -----

-----.

⑦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

<신 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① (생략)

②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부료등의 100분의 80을 감면 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을 감면 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

----- 100
-----.

제34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는 바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신 설>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

1. ----- 3개월 이내 --

--

2. ----- 6개월 이내 --

--

3. ----- 9개월 이내 --

--

4. 4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분납

<삭 제>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생 략)

<신 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신 설>

2. 교육지원청이 -----
----- 교육지원청에 -----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3급 관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법인등-----

제67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제67조 (생 략)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유재산 운영상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8조 (현행 제67조와 같음)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선군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변경(제4조제2항)

- 재산관리 담당과장에서 재산관리 담당국장으로 변경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20.12.22.) 반영

- 대부료·사용료의 감면과 관련된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조문 수정 및 삭제(제29조, 제31조, 제33조)

- 대부료·사용료의 납부부담 완화(제34조)

다. 3급 관사 운영비 지원 조건 완화(제55조)

- 종전)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 신설)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3급 관사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 기타 오탈자 정정

제273회 정선군의회(2021. 5. 18.)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4.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17호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12조”를 “「아동복지법」 제1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정선군 군수”를 “정선군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0명”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아동업무 담당 과장, 복지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재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제12조 -----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u>정선군군수</u> (이하 “군수” 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략) <u><신 설></u>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u>정선군수</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청소년과장이 된다. ② 당연직위원은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조(구성) ① ----- 15명 -----. <u><삭 제></u>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도교육청 또는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

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당연직 위원: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아동업무 담당과장, 복지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신 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안이유

- 가. 2020. 10. 01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상위법령의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여 활동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 나. 관련법에 근거 위원수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제2조제4항)
- 나. 위원수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 (제3조제1항)

제273회 정선군의회(2021. 5. 18.) 및 제4회 조례 · 규칙심의회(2021. 4.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18호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 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 경영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장” 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신용보증기관” 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특례보증”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차보전”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이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 지원사업)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 지원대상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특례보증지원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사업장 생산 제품의 포장재 제작 및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
5.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지원
6.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등 지원
7. 재난·재해로 인한 경기침체 등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5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융자금의 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하며, 지급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시설개선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2.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군에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군에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 수령 후 3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 사업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9조(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비 심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복지과장, 경제과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소상공인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

제18조(지원의 제한 등) 지원대상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 · 환수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
2. 혀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5. 국세 ·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사람
6. 유홍,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
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1조(사후관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계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또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보조금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 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나.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제6조)
 - 연 5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
- 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제7조)
 -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근거
- 라.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제8조)
- 마.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제9조)
- 바.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제17조)
- 사. 소상공인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 아. 소상공인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 자.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0조, 제21조)
- 차.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

제273회 정선군의회(2021. 5. 18.)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4.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19호

정선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 이란 공공시설 안의 상징조형물(동상·탑·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조각·금속공예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건립 인·허가 등” 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 보존 및 형상 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하며, 관리비용은 건립주체와 주관부서가 서로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비용을 관리부서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6조(건립대상의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
2.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
3. 그 밖에 군이 필요에 의한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대상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 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정체성에 부합할 것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을 구현할 것
3.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
4. 주변 지장물 또는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5. 규격 및 건립부지 면적이 적정하고,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설국장, 문화관광 관련 부서의 장,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정선군의회 의원 2명

나.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는 공공조형물을 심의함에 있어 지나친 요구를 해서는 아니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중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건립심의 신청 및 처리)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를 통하여 건립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

2.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

3.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에 준공신청

4.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 처리

④ 제3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시 위원회는 건립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심사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건립심의 신청 및 처리의 예외) 군에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 후 설계 또는 디자인 확정 전에 관리부서를 통해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 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설치가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건립신청서(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신청자	성명(단체명)		전화	
	주 소		대상자와 의 관계	
건립대상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성별	
	주요업적개요		사망자	

「정선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건립대상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서식]

건 립 계 획 서 (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1. 사업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채질 :

4. 작품설명

5. 제작자

6. 사업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명 칭		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		관리기관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공공조형물의 위치(배치)도

공공조형물의 전면사진 (5" × 7")

제안이유

도로 · 공원 등 공공시설의 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공조형물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제7조)
-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제8조 ~ 제11조)
- 다. 주기적 안전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제15조)

제273회 정선군의회(2021. 5. 18.)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4.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아리랑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20호

정선군 아리랑의 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한민족과 민족통합의 상징 중 하나인 아리랑의 원조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인류의 소중한 문화로서의 가치가 나날이 새로워짐에 따라 기념일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일 지정) 아리랑의 날은 매년 12월 5일로 한다.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정선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아리랑의 날 기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아리랑의 날 기념식
2. 축하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의 아리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 가. 아리랑의 본고장 정선에서 최초로 아리랑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국내외 아리랑 전파 및 교류의 선도적 역할 추진
- 나. 아리랑의 원조인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 다. 정선아리랑의 강원도무형문화재지정, 아리랑의 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에 따른 전통문화의 보존·활용 및 창조적으로 계승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목적(제1조)
- 나. 기념일 지정(제2조)
- 다. 기념식 및 행사(제3조)

제273회 정선군의회(2021. 5. 18.) 및 제4회 조례 · 규칙심의회(2021. 4.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21호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도시림등”을 “도시숲 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 · 생활숲 · 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도시림등 조성 ·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을 “(도시숲 등의 조성 · 관리 계획의 수립 ·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0조”를 “법 제6조”로, “도 시림등”을 “도시숲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도시림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도시숲 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를 “법 제13조”로, “도시림등”을 “도시숲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0조”를 “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도시림등의 수종 선정 및 구비조건)”을 “(도시숲 등의 수종 선정 및 구

비조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립등" 을 "도시숲 등" 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을 "다음" 으로, "도시립등" 을 "도시숲 등" 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도시립등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도시립등" 을 각각 "도시숲 등" 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 을 "법 제12조제2항" 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의 "도시립등의" 를 "도시숲 등의"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6.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정선군 도시립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정선군 도시립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선군 도시립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선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도시립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u>도시립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립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분리대”란 차도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해 왕복 차도 사이에 설치하는 분리대로 차도를 따라서 중앙에만 들어져 있는 녹지공간을 말한다. “수벽”이란 보·차도 경계석으로 구분된 보행자 공간 쪽에 설치한 공간에 잔디나 나 	<p><u>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 「<u>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 <u>도시숲 등의</u> -----, <u>도시숲 등의</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도시숲 등</u>”이란 「<u>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말한다.</p>

무 등 조경 수목을 심은 것을
말한다.

3. “부담금”이란 훼손된 가로수
(녹지대, 중앙분리대, 수벽 등
포함) 및 가로수 관리 시설물
등의 복구에 드는 모든 경비
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림등(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시림등 조성 · 관리계획
의 수립 · 시행) ① 정선군수(이
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0
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
하여 도시림등 조성 · 관리 계획
(이 조안에서 이하 “계획” 이
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 · 시
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은 도시림 자원의 관리
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군민의 이용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가로수 조성 · 관
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 · 관리계
획의 수립 · 시행) ① -----
----- 법 제6조-----
----- 도시
숲 등의 -----

-----.

② ----- 도시숲 -----

-----.

제5조(도시립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정선군 도시립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립등 조성 ·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립등의 조성 · 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립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 도시숲 등-----
-----.

1. 법 제6조-----

--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3. ----- 도시숲 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② -----
----- 도시숲 등-----
-----.
- ③ -----

포함해서 구성한다.

1. 도시립등의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

2. · 3. (생 략)

제8조(도시립등의 수종 선정 및 구비조건) ① 도시립등의 수종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 한다.

1. ~ 5. (생 략)

제9조(조성협의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행정기관 및 군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립등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10조(도시립등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1. 도시립등 조성에 관한 사항:
식재 위치, 식재 기준, 식재 시기, 식재 제한지역 등

2. 도시립등 관리에 관한 사항: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지형과 토양보전, 관리시설물, 점검, 관리 대장, 주민참여 등

3. 그 밖에 도시립등의 조성 ·

-----.

1. 도시숲 등 -----

2. · 3. (현행과 같음)

제8조(도시숲 등의 수종 선정 및 구비조건) ① 도시숲 등 -----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조성협의 등) 다음 -----

도시숲 등 -----

---.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1. 도시숲 등 -----

2. 도시숲 등 -----

3. ----- 도시숲 등 -----

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의 시행)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2. 「산림조합법」 제46조와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제12조(가로수 사업신청 및 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서식 가로수사업(식재 · 이식 · 제거 · 가지치기 등)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3조(부담금의 징수)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

<삭 제>

제12조(가로수 사업신청 및 비용부담) ① 법 제12조제2항

②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u>야 한다.</u>	
--------------	--

□ 제안이유

조례의 근거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6.9.공포, ’ 21.6.10.시행)」로 변경됨에 따라 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기존)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변경) 「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조례의 근거법령 변경(제2조)

다. 도시숲 등의 조성 · 관리 계획 수립 · 시행(제4조)

라. 도시숲 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5조)

마. 위원회 구성(제6조)

바. 도시숲 등의 수종 선정 및 구비조건(제8조)

사. 조성협의 등(제9조)

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제10조)

자. 가로수 사업신청 및 비용부담(제12조)

규 칙

제4회 조례 · 규칙심의회(2021. 4.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58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 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 · ” 를 “담당관 · ”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2호서식]

토석가격평가조사

소재지	지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도	규격	수량 (A)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m^3)			평가가격		비고	
							매매 실례	사정정통기관 또는 감정평가법인등		m^3 당 단가 (B)	금액 (A×B)		
								○○단체	○○조합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감정평가법인등)명

평정자 직 성명 (인)

-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석용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 6. (생 략) ② (생 략)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 -----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가격평정) ① (생 략)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u>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u>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감정평가법인등</u> ----- ----- -----.
제19조(매수신청) ① <u>실</u> ·과 및 사업소 읍·면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② (생 략)	제19조(매수신청) ① <u>담당관</u> ·--- ----- ----- ----- -----. 1.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p>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 ② (생 략)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 제46조(이하 “법” 이 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 제46조----- ----- ----- -----. -----.</p>
---	--

□ 제안이유

관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제16조제2항)